

『원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원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수시로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금액	• 제한없음
상품유형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계산하여 익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거주자) ※ 적용세율은 2025.09.01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 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기본이자율 (세금공제전)	•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원화보통예금 기본이율 적용
이자 산출근거	•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에서 게시한 이율로 계산함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해당없음

예금자보호여부	해 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세제혜택	불가능	세금우대 및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불가능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및 질권설정은 은행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거래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등의 거래 제한 (가)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나)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다)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창구를 통하여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을 통해 해지가 가능 하며, 일부해지 불가능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운영관리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부 (02-3788-6617), 부산지점(051-463-8788), 대림지점(02-836-6815), 건대지점(02-3409-890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록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본인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상품설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예금주: _____ (인 또는 서명)

대리인: _____ (인 또는 서명)